

자활사업조사연구

Ⅰ 2018 - 04 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설계방안 연구

2018. 12.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재단
법인

중앙자활센터

연구책임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경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연구보조원

이숙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의 저축습관을 장려하고 자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축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음.

○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2007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I (2010년), 자활사업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2013년), 미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014년),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2018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2009년), 꿈나래통장(2009년), 희망두배청년통장(2015년),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름통장(2018년)이 개설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2016년에 시작되어, 2018년 현재 15,000여명이 가입하여 저축을 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성과목표 및 지표에 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여러 대상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다양한 통장 종류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여, 2018년 7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45%만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중도환수해지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111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었던 통장 사례관리사를 2018년에 35개소를 추가 배치하여 신규가입자 발굴, 통장 유지를 위한 상담 및 관리, 해지 서류 접수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와 금융, 재무 교육 등의 자립 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완책 및 전략은 부족한 상황임.

□ 대상별 정책 요구에 의해 다양화되고 있는 통장사업들(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1과 2,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실시되면서 복잡해지는 제도내용과 함께 참여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통장 사업들의 재설계 또는 제도개편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통장사업의 재설계 및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각 통장별 사업내용의 개편을 통해 통장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통장사업들의 개선과정을 분석하고 각 통장사업들(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자함.

○ 제도 비교 및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통장사업들의 제도 비교를 실시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사업들(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 논의점과 연계하였음.

○ 통장사업들의 제도분석(참가자격, 매칭 및 인센티브,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해지조건 등)을 통해서 통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 복잡해지는 통장사업들의 재구축을 위해 통장사업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장사업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인생주기성을 강조하여 빈곤탈출 및 빈곤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사업들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를 제시함.

II. 자산형성지원제도 의미

□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정책의 한 유형으로 간주됨.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기여함.

○ 가령, 저축은 경제적 행위로, 개인은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며 개인의 저축은 총수요 증가에 긍정적임. 더불어, 저축 그리고 미래 소비는 생산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음. 저축 및 자산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 발전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함.

○ 자산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킴. 사람들은 미래소비뿐 아니라,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위해 저축하는데, 본인뿐 아니라 아동

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저축은 결국에는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함.

III.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1.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과정

□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는 2007년 취약계층 아동들(시설아동중심)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이 실시되면서 확산됨.

○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사업과 꿈나래통장사업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실시됨.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층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I 을 2010년 실시하였고, 뒤를 이어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Ⅱ가 시행되었음.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장사업들이 실시되었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시되었음.

□ 중앙부처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이 있음.

○ 희망키움통장 I 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하여금 저축을 통해 탈수급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됨. 구체적으로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에 자력이 주어졌음.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

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희망키움통장 II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소득상한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설정됨)으로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희망키움통장 II는 월 저축액이 10만원으로 고정되고 있고, 매칭율도 1:1로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년 만기를 기준으로 720만원과 추가 이자소득의 혜택을 받음.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성실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통장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저축금액은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일키움통장의 저축목적은 탈수급 또는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을 목표로 함. 2018년 9월 기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총 20,34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지급해지율은 17.8%, 환수해지율은 47.0%로 나타남.

IV. 통장사업의 발전과정과 성과

1. 통장사업 현황 및 성과

□ 통장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 ‘통장별 청년층 비율’, ‘통장별 세대비율’, ‘해지유형 사례수’, ‘통장 해지사유’ 등을 알아보았음.

□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를 조사한 결과, 통장 참여자수는 총

211,350명으로 조사되었다. 통장별 참여자수는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수가 143,7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희망키움통장Ⅰ’ 참여자수가 43,485명,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수가 21182명, ‘청년통장’이 2,904명을 차지하고 있음. 시도별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3,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2,102명, ‘부산광역시’가 1,907명, ‘인천광역시’가 1,736명, ‘광주광역시’가 1,540명으로 나타남. 시도별 청년통장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남도’가 289명, ‘서울특별시’가 231명, ‘부산광역시’가 225명, ‘경상북도’가 213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희망키움통장Ⅰ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6,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가 5,065명, ‘서울특별시’가 4,201명, ‘대구광역시’가 3,437명, ‘광주광역시’가 3,340명으로 나타남. 시도별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19,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9,382명, ‘부산광역시’가 5,602명, ‘인천광역시’가 5,373명, ‘대구광역시’가 4,303명으로 나타남.

□ 통장별 세대비율을 조사한 결과, 내일키움통장의 50대 비율이 7921명(37.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가 5939명(27.9%), 40대가 4431명(20.8%), 30대가 1122명(5.2%), 20대가 1101명(5.2%)로 나타남. 청년통장의 경우 20대가 2154명(73.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422명(14.5%), 10대가 334명(11.5%)로 나타남. 희망키움통장Ⅰ은 50대가 18,768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가 11,843명(27.1%), 60대가 4,569명(10.5%), 20대가 4,341명(9.9%), 30대가 2,973명(6.8%)

로 나타났다. 희망키움통장Ⅱ는 40대가 35,050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7,978명(23.5%), 30대가 10,899명(14.3%), 20대가 3,620명(4.7%), 10대가 2,496명(3.3%)을 차지하고 있음.

□ 해지유형 사례수는 총 78,047명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중 ‘지급해지’가 42,137명(5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환수해지’가 35,517명(45.50%), ‘일부지급해지’가 390명, ‘미신규해지’가 3명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Ⅰ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사업소득 증가’가 21,096명(59.3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수급권 포기’가 7,708명(21.67%),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이 3,584명(10.07%), ‘본인적금연속미납’이 1,593명(4.47%), ‘재산소득증가’가 684명(1.92%)으로 나타남.

□ 희망키움통장Ⅱ 해지사유를 조사한 결과 ‘만기’가 8,806명(40.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이어, ‘본인희망포기’가 5,549명(25.44%), ‘소득기준초과’가 2,971명(13.62%), ‘수급자진입’이 1,979명(9.07%), ‘6개월근로활동없음’이 1,023명(4.69%)으로 나타남.

□ 내일키움통장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희망포기’가 7,834명(60.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취업’이 2,404명(18.54%), ‘창업’이 595명(4.59%), ‘본인적금연속미납’이 488명(3.76%), ‘탈수급’ 455명(3.51%)으로 나타남.

□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희망포기’가 31명(6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군입대’가 8명(17.77%), ‘근로사업소득 증가’가 5명(11.11%), ‘본인사망’이 1명(2.22%)으로 나타남.

V.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이슈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현재 통장사업은 근로활동을 함에도 가입기준 미충족으로 가입이 안 되거나, 통장 유지시 상·하한 기준이 미달 혹은 초과시 해지가 되는 상황임.

□ 통장사업 참가기준으로 하한선을 규정할 시 그 기준 이하의 소득과 저축 의지가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이런 소득하한선의 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방식보다 참여자격을 평가기준표(근로기간, 소득수준, 가구구성원수 및 구조, 저축의지 등)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서류심사 심사표(자격요건, 가구특성, 취업지원여부, 가구여건, 사업이해도, 저축지속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그리고 기타평점)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서류심사 심사표(자립성공가능성, 통장유지가능성, 가구특성,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기타평점)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참가자 선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여자격 기준의 변경으로 확대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 각 통장사업별 지원자 중에서 소득하한선을 넘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통장 유지조건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소득상한 유지선을 더 높이 책정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으로 이 소득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은 유지 및 관리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임. 통장가입후 소득이 인상되는 것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으로 유지 소득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통장 유지조건의 소득하한선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의 유예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일시적인 소득의 하향에 대해서 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자산형성지원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

1)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가자를 생계급여 대상 가구에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 급여 가구 즉,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참가조건으로 소득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 하한선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일시적인 저

소득의 이유로 통장사업 참여기회의 박탈은 역진적인 특성을 보임. 이상적으로는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소득의 경우에도 그 일부 심사항목으로 참가자 선발을 하는 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청년 본인의 실질적인 저축액이 없고, 근로 소득 발생의 경우 공제형식으로 10만원이 저축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에 대해 개선논의가 필요함. 저축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통장에 저축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저축효과가 중요한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공제를 통해 저축이 발생하는 것은 저축동기 및 저축의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I의 통합이 필요함. 이 두 통장의 경우 저축목적인 탈수급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과 비청년의 구분을 통해 각각의 통장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한 제도 안에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희망키움통장 I &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내에서 청년트랙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보임.

2)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생계 및 의료 급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여기에서도 소득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즉, 통장 사업 지원시 평가항목들을 구성하

여 지원자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됨. 처음부터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금융교육이 의무화 적용이 안 되고 있음. 통장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저축액에 대한 매칭을 강조하여 일반 적금상품으로만 간주된다는 점임. 금융교육과 사례관리의 철저한 실시가 저축유지 및 저축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을 높일 것임.

3)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저축액 10만원에 1:1을 매칭하는 수준으로 3년 만기시 총 720만원 +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즉, 빈곤예방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그 저축액과 매칭의 합계가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음. 실질적으로 빈곤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의 상향조정 및 매칭율의 개선이 이뤄져야함.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에도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임.

□ 희망키움통장Ⅱ의 유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통장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득 상승을 허용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금의 중위소득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서 내일키움통장이 활용되고 있으나, 높은 환수해지율에서 나타나듯 내일키움통장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높은 환수해지율이 나타나는 참여자 유형 및 환수해지 사유에 관한 좀더 세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환수해지율의 경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및 도우미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환수해지율의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자격기준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익형(인턴, 도우미형) 자활인턴 참가자도 내일키움통장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형의 한 유형으로 진입하고 있는 공익형 자활사업참가자의 경우 통장 가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통장가입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자산형성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심사기준표(현재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심사표를 구성하여 판단하고 있음)를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 통장 참가자격을 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지급요건이 다양하다는 점도 내일키움통장의 특징인데, 지급요건별 통장 만기의 지급 현황을 분석하여 저축목적에 대한 달성율을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내일키움통장 졸업 후 희망키움통장으로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에 관한 내용이 없음. 제도적 연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VI. 결론

□ 정책 주요 타겟 대상으로서 청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통장사업의 실시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I &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스페셜 트랙으로의 청년통장에서는 매칭율을 포함한 인센티브, 금융교육, 그리고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해 보임.

□ 희망키움통장 I 의 경우 통장참가 자격조건으로서의 소득하한선을 점차 완화하고 그 소득기준 아래에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도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통장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사례관리의 대상자별 및 욕구별 체계적인 실시 및 관리가 필요함.

□ 희망키움통장II의 경우 저축액과 매칭을 고려한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빈곤예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희망키움통장II의 경우 저축액과 매칭율의 조정을 통해 저축목적의 투자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희망키움통장II의 유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통장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기 보단, 높은 수준의 통장유지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환수해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더 세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함. 일차적으로 참가자 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조건들이 필요해 보임. 단순히 자활사업 성실참가(1개월간) 조건에 추가하여 꼼꼼한 자격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추가적으로 대상 유형별 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함.

□ 통장사업의 체계적인 연계 확보방안이 필요함. 연계과정에서 가구별 각 통장별 자격요건에 따라 일생동안 참여가능한 통장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통장사업별 참가자들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연계성공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3
제3절 연구내용	4
제2장 자산형성지원제도 의미	5
제1절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와 자산효과	5
가. 자산형성지원제도 의의	5
나. 자산복지효과이론	7
다. 포용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분석틀	10
제3장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41
제1절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과정	41
제2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황	1
제3절 중앙부처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71

가. 디딤씨앗통장	17
나. 청년희망키움통장	19
다. 희망키움통장 I	21
라. 희망키움통장 II	21
마. 내일키움통장	23
바. 청년내일채움공제	27
사. 미래행복통장	30
아. 지방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43

제4장 통장사업 발전과정과 성과33

제1절 통장사업 발전과정	33
가. 희망키움통장 I	9
나. 희망키움통장 II	41
다. 내일키움통장	53
제2절 통장사업 현황 및 성과	55
가.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	58
나. 통장별 청년층 비율	59
다. 통장별 세대비율	60

라.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	16
마.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	18
바. 통장유형별 사례관리 횟수	35
사. 시도별 사례관리 횟수	46
아. 수혜금별 금액	44
자. 통장 해지사유	65
차. 해지유형 사례수	70

제5장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27

제1절 이슈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27
가. 참여대상 및 유지 자격 기준	27
나. 저축액과 저축기간	75
다. 인센티브: 매칭율과 근로소득장려금	77
라.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8
제2절 자산형성지원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	28
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개편논의	28
나. 통장 사업별 제도 개선 방안	48
다. 통장 사업간 체계적 연계제도 확충	78

제6장 결론 90

제1절 통장제도 개선 방안 요약09

가. 통장의 제도적인 내용의 개선방안09

나. 통장별 재설계 방안 요약29

제2절 추가 논의사항들 9

가. 환수해지와 중도해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필요59

나. 각 통장 프로그램들의 성과지표 개선 및 보완59

다. 통장 운영위원회의 활성화9

라. EITC와 저축프로그램 간 연계 9

표 목차

<표 2-1>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정책의 연관성 5

<표 2-2>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내용3· 1

<표 3-1>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5· 1

<표 3-2>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6· 1

<표 3-3> 통장별 비교사항9· 1

<표 3-4> 2017년 희망키움통장 I 소득 상·하한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2

<표 3-5> 희망키움통장 I 지원예시와 최대지원2· 2

<표 3-6> 희망키움통장 I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3· 2

<표 3-7> 2017년 희망키움통장Ⅱ 소득 상·하한 기준	4· 2
<표 3-8> 희망키움통장Ⅰ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	5· 2
<표 3-9> 내일키움통장 최대와 평균	6· 2
<표 3-10> 내일키움통장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	7· 2
<표 3-11> 청년공제 가입 유형	8· 2
<표 3-12>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비교	9· 2
<표 3-13>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프로그램	7· 3
<표 4-1> 희망키움통장Ⅰ 변경사항	0· 4
<표 4-2> 희망키움통장Ⅱ 변경사항	8· 4
<표 4-3> 내일키움통장 변경사항	4· 5
<표 4-4>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	9· 5
<표 4-5> 통장별 청년층 비율	0· 6
<표 4-6> 통장별 연령대 비율	1· 6
<표 4-7>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	2· 6
<표 4-8>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	3· 6
<표 4-9> 통장유형별 사례관리횟수	3· 6
<표 4-10> 시도별 사례관리횟수	4· 6
<표 4-11> 수혜금별 금액	5· 6
<표 4-12> 희망키움통장Ⅰ 해지사유	6· 6
<표 4-13> 희망키움통장Ⅱ 해지사유	7· 6
<표 4-14> 내일키움통장 해지사유	8· 6
<표 4-15>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사유	9· 6
<표 4-16> 해지유형 사례수	1· 7
<표 5-1> 참여대상 및 자격	3· 7

<표 5-2> 저축액과 저축기간	5· 7
<표 5-3> 매칭율 및 근로소득장려금	7· 7
<표 5-4> 금융교육시간	9· 7

그림목차

<그림 3-1> 한국 통장사업의 전개과정	4· 1
<그림 5-1> 현행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2· 8
<그림 5-2>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방안	2· 8
<그림 5-3> 통장사업의 연계	9· 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의 저축습관을 장려하고 자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축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음.
-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2007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I (2010년), 자활사업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키움통장(2013년), 미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014년),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2018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2009년), 꿈나래통장(2009년), 희망두배청년통장(2015년),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름통장(2018년)이 개설됨.
-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2016년에 시작되어, 2018년 현재 15,000여명이 가입하여 저축을 하고 있음.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이상 ~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참여자는 3년간 근로 유지와 매월 10만원씩 저축시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하여 만기일에 약 1,00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음.
-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성과목표 및 지표에 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 여러 대상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 취지와 달

리, 다양한 통장 종류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여, 2018년 7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45%만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중도환수해지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111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었던 통장 사례관리사를 2018년에 35개소를 추가 배치하여 신규가입자 발굴, 통장 유지를 위한 상담 및 관리, 해지 서류 접수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와 금융, 재무 교육 등의 자립 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완책 및 전략은 부족한 상황임.

□ 대상별 정책 요구에 의해 다양화되고 있는 통장사업들(중양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1과 2,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실시되면서 복잡해지는 제도내용과 함께 참여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통장 사업들의 재설계 또는 제도개편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장사업의 재설계 및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각 통장별 사업내용의 개편을 통해 통장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도가 필요함.

제 2 절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태분석
 - 국내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제도 및 정책 비교분석
- 통장의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통장 종류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비교분석(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통장 사례관리사가 경험한 통장의 성과 및 문제점.
- 자활정보시스템 전산자료 분석 및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한 정성 분석(qualitative analysis)
 - 자활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통한 참여자 분석, 통장해지, 사례관리 및 금융교육 시행 분석
 - 통장 사례관리사들의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통장사업의 현황,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

제 3 절 연구내용

- 통장사업들의 개선과정을 분석하고 각 통장사업들(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함.
- 제도 비교 및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통장사업들의 제도 비교를 실시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사업들(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논의점과 연계함.
- 통장사업들의 제도분석(참가자격, 매칭 및 인센티브,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해지조건 등)을 통해서 통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함.
- 복잡해지는 통장사업들의 재구축을 위해 통장사업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장사업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함.
-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인생주기성을 강조하여 빈곤탈출 및 빈곤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사업들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함.

제 2 장 자산형성지원제도 의미

제 1 절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의의와 자산효과

가. 자산형성지원제도 의의

□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정책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Midgley, 1999; Sherraden, 2016), 두 정책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다음과 같음

<표 2-1>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정책의 연관성

사회투자정책	자산형성지원정책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저축은 그 자체로 경제적 행위 저축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
인간의 가능성의 개발	인적 자본의 발전에 기여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진취시킴
예방적 정책	위기를 완충하는 역할
고용 중심의 정책	저축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첫째,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기여함
 - － 저축은 경제적 행위로, 개인은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하며 개인의 저축은 총수요 증가에 긍정적이며, 저축 그리고 미래의 소비는 생산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음
 - － 저축 및 자산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 발전과 연관되

기도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함

○ 둘째, 자산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킴

- 사람들은 미래소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위해 저축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저축은 결국에는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미함

- Sherraden(1991)에 의해 강조되었듯 자산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셋째, 소득보전은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이전한다는 즉, 사후적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예방과 능력의 향상을 강조함

-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을 완충하며(Sherraden, 199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는 관점에서 자산은 사회투자정책이 예방적 접근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함

○ 마지막으로, 근로 및 고용은 저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저축액은 실업을 당했을 때에 이용되기도 하고, 저축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개인발전계좌의 사용처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 참여자들은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미래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 학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직업훈련 등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저축 프로그램이 고용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미국 개인발전계좌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저축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증가시킨다

는 결과도 있음

- 이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생산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사회투자정책과 기본적인 맥락과 특성을 같이하고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용 성장의 취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자산복지효과이론

○ 자산은 축적된 자원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자산은 미래의 사회적 위험을 감수할 기반을 제공하고 계획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며, 또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함

○ Sherraden(1991)은 다양한 자산효과를 9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자산은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킴 (Dew, 2008a; Krumm & Kelly, 1989; PAGE-Adams & Sherraden, 1996; Raheim & Alter, 1995; Rothwell & Han, 2010; Han & Kim, 2014; Han & Hong, 2011)

-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자산의 주요 역할은 중병, 실직, 이혼 등과 함께 발생하는 소득 불안을 완화시키고, 자산은 가구의 경제적인 압박감을 줄이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부터 가족을 보호함(Rothwell & Han, 2010).

- 둘째, 자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자원임 (Bynner & Paxton, 2001; Han, Ssewamala & Wang, 2013; Kohn, et al., 1990; PAGE-Adams & Sherraden,

1996; Shobe & Page-Adams, 2001)

- 자산은 미래에 대한 통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줌. 게다가 자산은 저축과 관련된 이득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구조를 통해 자산 축적을 증가시킬 것이며 (Lombe, Nebbitt & Buerlein, 2007),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줌
- 셋째, 자산은 인적 자본과 다른 유형의 자산의 발달을 촉진시킴 (Johnson & Sherraden, 2007; Pandey, 2003; Yadama & Sherraden, 1996)
 - 사람들은 투자하고, 관리하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정보를 구하는데 집중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재정적인 지식을 얻고 교양을 얻게 됨. 이러한 경험과 함께 사람들은 추가적인 재정적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이익과, 노력과 성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음(Sherraden, 1991)
- 넷째, 자산은 기술의 집중 및 전문화를 가능하게 함
 - 자산 축적은 집중과 전문화를 가능하게 함. 먼저, 전문화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데 자산이 소득에 앞서 필요함. 다음으로, 자산 없이는,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지불하기 위한 자원이 없음 (Sherraden, 1991).
- 다섯째, 자산은 위험을 각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Sherraden, 1991; Zhan, 2006)
 - 자산은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자신의 확보를 의미함. 따라서 자산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짐.

- 여섯째, 자산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킴 (Scanlon & Page-Adams, 2001; Yadama & Sherraden, 1996)
 -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일곱째, 자산은 사회적 영향력을 높임 (Duran, 2002; Pandey, 2003; Rohe & Stegman, 1994)
 - 자산은 경제적 복지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효과도 야기함(Sherraden, 1991).
- 여덟째, 자산은 정치적 참여를 증가시킴 (Han & Hong, 2013; McBride, Lombe & Beverly, 2003; Pandey, 2003; Paxton, 2001; Sherraden, 2014)
 -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할 더 많은 동기부여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Sherraden, 1991).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더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다는 (곽현근, 2007)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남.
- 아홉째, 자산은 후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킴 (Han, Rothwell & Lin, 2012; Mayoux, 2001; Zhan, 2006; Zhan & Sherraden, 2003)
 - 미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자산은 또한 후세대의 복지를 향상시킴. 자산의 누적적인 현상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세대 간의 복지효과임(Sherraden, 1991). 자산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Reynolds & Lee, 1991; Reynolds & Walberg, 1992).

제 2 절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분석틀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정책은 기존의 소득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산불평등, 자산효과의 중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통장사업의 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며 확산되고 있음(Han, 2013).
- 특히 자산형성지원제도는 규모에 있어서 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시작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후에 규모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가능하면 많은 대상을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징임.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분석틀의 주요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¹⁾. 첫째,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보편적(universal) 적용을 강조하고 있음.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차적인 단계는 그 동안 자산축적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포함(inclusion)하는 것을 의미함.
-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주장한 Sherraden(1991)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이 통장들을 통해 각종 사회적 위험들(노령, 실업, 질병 등)에 대처해 나가

1)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은 한창근 외(2015)의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는 것을 포괄적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제도들이 일차적으로 제도 출발단계에서 대상을 한정해서 실시하는 잔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인 1통장의 보편적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둘째,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누진성(progress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기존의 많은 저축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

□ 기존 저축프로그램이 역진성의 성향을 가진다는 판단은 두 가지 점에 근거함. 첫째, 저소득층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저축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의 주택통장, 국가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참여를 못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둘째,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중상층보다 적기 때문에 혜택(예를 들어, 세금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런 상황에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여 저축을 장려하는 누진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누진성을 의미함. 국민층을 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국민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더 높은 매칭율²⁾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누진성

2)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희망플러스 통장사업에서 수급자에게는 1:1의 매칭을 차상위계층에게는 0.5:1의 매칭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을 가르침.

- 셋째, 자산형성은 그 자체로 일생동안(life course) 진행되는 장기적(long-term)인 과정임. 이러한 장기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정책 방향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우선,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미국, 우간다,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일생동안 지속적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된 저축을 성인기와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저축제도 연계를 마련해야함.
- 싱가포르가 이러한 연계적인 저축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대학학자금저축계좌(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s), 개인강제저축프로그램(Central Provident Fund)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Han, 2013).
-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마지막 특성으로 적절성(adequacy)이 있음. 적절성이란 저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축하면 어느 정도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의미함.

차등화된 매칭율의 적용은 누진성에 근거한다.

□ 저축프로그램 목적이 탈빈곤³⁾이라고 하면 참여자의 어느 정도가 탈빈곤을 달성하였고 또한 제도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함. 또한 저축목적(주거, 교육, 창업 등)을 정한 경우 어느 정도 그 각각의 저축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통해서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발달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

<표 2-2>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 내용

주요 요인	주요 특성들
보편성(Universality)	-자산형성의 공평한 기회 -저축제도 접근권 보장 -규모의 확대
누진성(Progressiveness)	-저소득층에 대한 인센티브 -매칭율의 조정 -추가적인 세제 혜택
일생주기성(Life-long)	-가능하면 출생부터 저축 시작 -저축의 연계성 확보 -지속성 확보
적절성(Adequacy)	-저축프로그램 목적의 달성 정도 -경제적 사회적 발전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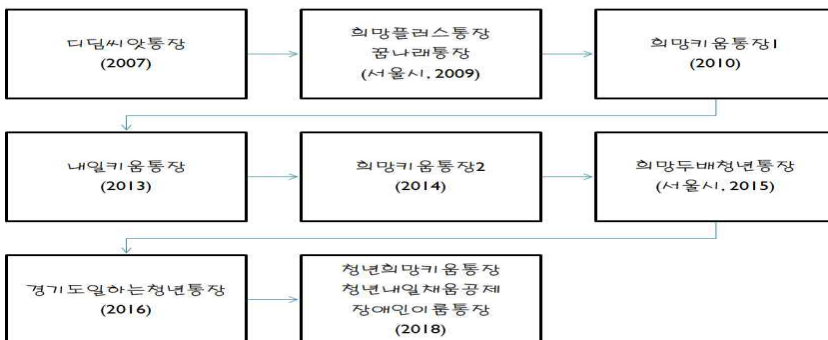
출처: Han(2013: 57)

3)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1이 대표적인 탈빈곤 저축지원제도이다.

제 3 장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제 1 절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 발전과정

- 국내 자산형성지원제도는 2007년 취약계층 아동들(시설아동중심)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이 실시되면서 확산됨. 서울특별시 희망플러스통장사업과 꿈나래통장사업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실시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층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Ⅰ을 2010년 실시하였고, 뒤를 이어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Ⅱ가 실시됨.
-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 중심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장사업들이 실시되었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시되었음.



<그림 3-1> 한국 통장사업의 전개과정

제 2 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표3-1> 중앙정부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근로빈곤층) ·희망키움통장 II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저소득 근로빈곤층)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참여자) ※ ‘드림셋’시범운영(2015) ㉠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 채무상환 3가지 연계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와 협약하여 운영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탈북 새터민 자산형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표3-2>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울 희망플러스 ☞ 희망키움통장 유사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6) ☞ 최초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꿈나래통장(아동발달계좌,~14세)☞ 3년/5년, 5/7/10/12만원, 1:1 매칭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2018년 실시됨)
부산광역시	·청년 희망날개통장 (2017.7) ☞18~34세, 중위 8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0만원, 1:1 매칭
대전광역시	·행복나눔 청년희망통장 (2017.10) ☞18~34세, 중위 10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5만원, 1:1 매칭
광주광역시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행복통장 (2016) ☞ 여가부 사업 중단 후 자체 실시 ·5만원, 1:3 매칭(시 2, 민간 1)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발달장애인복지 TF 설치 및 계획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후 참고하여 진행 예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7)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2017.10) ☞18~39세, 중위 80%(월소득 200만원 이하), 3년, 10만원, 1:1 매칭

※ 각 시도별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검토 중

제 3 절 중앙부처 주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2007년 4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저소득가정 아동(2011년부터 추가됨)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1인 월 40,000원(2017년부터 월30,000원에서 월 40,000으로 인상됨) 이내 1:1 매칭지원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아동 2004년생(만 12세), 2005년생(만 13세) 가입 가능; 2018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확대되었음)

○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최대 월 50만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대 4만원까지 매칭해서 적립해 줌

○ 추가 적립 관련하여,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만원(연간 552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디딤씨앗통장에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의료비, 결혼비용 등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디딤이 되는 종잣돈(Seed Money)으로 사용됨

□ (참여대상 선정기준 및 자격유지 기준) 디딤씨앗통장의 선정기

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같은 보호대상아동과 2011년부터 일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

○ 2018년부터 실시된 아동수당을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함.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함

○ 다만, 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이 가능함

□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함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함

○ 정부의 매칭 지원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로 함

나.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 청년들의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급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됨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만 15~34세의 생계 수급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참여 소득기준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50%이상이어야 함

<표 3-3> 통장별 비교사항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시행	'18년 시행 예정	'10. 4월	'14.7월	'13.3월
가입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15~34세)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50% 이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본인 저축액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하여 통장에 자동 적립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월 10만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정부 지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 평균 30만원, 최대 50만원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소득 10만원 증가시 8.5만원 추가) * 평균 33.4만원, 최대 61만원('16년)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 · 사업단별 매칭* +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평균 적립액	1,440만원(소득공제 360) + 이자 * 최대 2,160만원	1,562만원(본인 360) + 이자 * 최대 2,600만원	720만원(본인 360) + 이자	1,368만원(본인 10만원 경우) + 이자 * 최대 1,620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 탈수급	통장 3년 유지(교육·사례관리 이수)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예 산	'18 11,039백만원	18,428백만원	51,028백만원	5,248백만원
	'17 -	27,328백만원	45,994백만원	6,939백만원
누적 지원 인원 (17.7)	5천명('18년)	40천 가구	58천 가구	17천명
지급 요건	·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및 결혼 자금 · 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			

주: 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청년이 본인이 저축

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소득이 발생시 10만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저축하게끔 설정되었다는 점임

- 10만원의 공제에 더하여 소득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장려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구조임
 - 근로장려금은 평균 월30만원 최대 50만원 규모임
 - 3년 참여기간동안 평균 1,440만원, 최대 2,16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참여후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의 수혜조건은 탈수급임

다. 희망키움통장 I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I 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하여금 저축을 통해 탈수급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음.
 - 구체적으로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에 자격이 주어짐
 -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 5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X 0.6)] X 0.43(장려율)
 - 10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85(장려율)

□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소득기준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4> 2017년 희망키움통장 I 소득 상·하한 및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하한액 (기준중위 소득 40%의 60%)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1,667,22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225,000	383,000	495,000	608,000	608,000	608,000	608,00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26,465원씩 증가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장려금을 통한 지원예시와 최대 지원액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표 3-5> 희망키움통장 I 지원예시와 최대지원

지원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이자
	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45 = 월 55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이자
최대 지원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이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이자

* 정부지원금 산출식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X 0.6)] X 0.85]

□ 희망키움통장1의 참가자 현황 및 성과는 아래 표와 같음(2018년 9월 기준)

○ 전체 참가자의 경우 지급해지율은 52.5%, 환수해지율은 32.2로 나타남.

○ 참가기간 3년이 종료된 코호트(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의 경우 지급해지율이 59.3%(2013년)에서 69.1%(2012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사업 시작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지급해지율을 고려하여 어떠한 이유에 의해 지급해지율의 감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제도분석 및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임.

<표 3-6> 희망키움통장 I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

연도	가입자	해지 가구				유지 가구	유지율 (%)
		환수 해지	비율 (%)	지급 해지	비율 (%)		
합계	42,679	13,726	32.2	22,396	52.5	6,476	15.2
2010	10,698	3,562	33.3	7,136	66.7	—	0.0
2011	4,093	1,268	31.0	2,825	69.0	—	0.0
2012	3,046	941	30.9	2,105	69.1	—	0.0
2013	9,083	3,697	40.7	5,383	59.3	3	0.1
2014	5,286	2,078	39.3	3,182	60.2	26	0.5
2015	2,680	842	31.4	1,286	48.0	471	17.6
2016	3,027	732	24.2	317	10.5	1,978	65.3
2017	3,303	566	17.1	156	4.7	2,581	78.1
2018	1,463	40	2.7	6	0.4	1,417	96.8

라. 희망키움통장Ⅱ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소득상한액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설정됨)으로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Ⅱ는 월 저축액이 10만원으로 고정되고 있고, 매칭율도 1:1로 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년 만기를 기준으로 720만원 + 추가 이자소득의 혜택을 받음.

○ [지원액]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720만원 + 이자

<표 3-7> 2017년 희망키움통장Ⅱ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가입 가능 소득상한액 (소득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548,641	2,548,641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4,862,743

* 가입가능 소득상한은 소득인정액 기준임

**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기준이며,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 유지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참여자격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희망키움통장Ⅱ 총 가입자는 76,35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급해지가구 비율은 18%, 환수해지 비율은 15.6%에 해당함.

○ 전체 참가자별 지급해지율과 환수해지율을 고려할 때, 참여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저축프로그램 참가연도인 3년을 생각하면 2014년 참가자의 경우 그 저축성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2014년도 참가자의 지급해지율은 74.1%, 환수해지율은 25.8%로 나타남.

○ 2014년 기준으로 희망키움통장1과 2의 지급해지율의 경우 희망키움통장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원인이 희망키움통장2의 경우 제도 시작 시점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임.

<표 3-8> 희망키움통장Ⅱ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

연도	가입자	해지 가구				유지 가구	유지율 (%)
		환수 해지	비율 (%)	지급 해지	비율 (%)		
합계	76,357	11,944	15.6	13,746	18.0	50,667	66.4
2014	10,257	2,648	25.8	7,601	74.1	8	0.1

2015	14,989	4,029	26.9	4,759	31.7	6,201	41.4
2016	18,460	3,136	17.0	890	4.8	14,434	78.2
2017	23,677	2,059	8.7	495	2.1	21,123	89.2
2018	8,974	72	0.8	1	0.0	8,907	99.2

마.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성실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통장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저축금액은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음.

○ 내일키움통장 (월 저축액 10만원 선택 시)

<표 3-9> 내일키움통장 최대와 평균

최대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15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이자
평균	본인저축 10 + 정부지원 10 + 사업단 매출액 10 + 사업단 수익금 8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68만원 +이자

□ 내일키움통장의 저축목적은 탈수급 또는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총 20,344명으로 나타났다으며, 그중 지급해지율은 17.8%, 환수해지율은 47.0%로 나타남.

○ 2013년도와 2014년도 3년 사업만기가 도래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환수해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2013년도 참가자의 경우 환수해지율은 66.0%, 2014년도 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율은 66.7%로 높게 나타남.

<표 3-10> 내일키움통장 해지 및 유지가구 비율

연도	가입자	해지 가구				유지 가구	유지율 (%)
		환수 해지	비율 (%)	지급 해지	비율 (%)		
합계	20,344	9,568	47.0	3,620	17.8	6,746	33.2
2013	5,274	3,480	66.0	1,653	31.3	7	0.1
2014	2,216	1,477	66.7	652	29.4	10	0.4
2015	3,241	1,566	48.3	578	17.8	1,003	30.9
2016	4,626	1,913	41.4	582	12.6	2,051	44.3
2017	3,285	1,027	31.3	152	4.6	2,082	63.4
2018	1,702	105	6.2	3	0.2	1,593	93.6

□ 내일키움통장의 또 다른 역할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가자로 하여금 자활사업 참가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지역 자활센터의 사례관리사들은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바.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인턴제 등 고용촉진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
- 기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됨. 하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함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후 만기공제금이 1,600만원 +이자 수령
- 3년형: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함

□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확대 개편내용

- (가입유형 확대)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확대

<표 3-11> 청년공제 가입 유형

①청년취업 인턴제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	--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고용촉진사업 (인턴기간 1~3개월)
②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I 유형), 청년 미취업자(II유형)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사업 (취업지원기간 9~16개월)
③일학습 병행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고용촉진사업 (학습근로기간 6~48개월)

□ 사업추진절차



<표 3-12>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비교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가입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상 영위업종 중소·중견기업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사업주가 지정한 재직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가입자 평균연령 38.5세)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된 자 * 만 15세 ~ 34세 청년
신청기한		-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가입기간		5년(최초)	2년, 3년

	3~5년(재가입)	*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가입방법	중진공 지점가입 홈페이지 가입	홈페이지 가입
납입비용	근로자 : 기업 = 1 : 2이상	2년 근로자:기업:정부 = 1 : 1.3 : 3 3년, 근로자:기업:정부 = 1 : 1 : 3
적립금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2년, 1,600만원 3년, 3,000만원
납입방법	계약자별 은행계좌에서 중진공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	(근로자) 자동이체 납부 (기업) 정부에서 중진공으로 적립 또는 기업 직접 납부 (정부) 정부에서 중진공으로 적립
납입주기	계약자 각각 매월 납부	(근로자) 매월 납부 (기업, 정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6·12·18·24개월 후

사.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 (적립금액)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세전 근로소득 중 월 최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함

○ (지원신청자 자격기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일 것

② 정착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의 상태일

것.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태일 것. 다만, 취업 중이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영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 ④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 ⑤ 정부·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 ⑥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 ⑧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 ⑨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통일부 미래행복 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11억 9000만원 가운데 31%인 3억 6,900만원만 집행하고, 8억 1,700만원이 불용”

－ 모집대상 인원수로는 40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192명만이 가입

－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가운데 76.7%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소납입금을 조정할 필요성 높아짐.

－ 또한, 최소적립액 10만원과 최대적립액 50만원의 경우 1:1로 매칭 시, 적립액이 높을수록 지원혜택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근로소득이 높은 탈북민의 지원혜택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

□ 2017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률 제고 및 제도 보완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사용용도 제한 완화

－ 사용용도에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상품 가입 추가

• 현재 사용용도는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

업 등만 가능

○ 신청자격 완화

- 한 직장 3개월 ⇒ “한 직장” 부분을 삭제하여 동일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

○ 적립금액 산정 기준 변경

- 신청월 직전 1개월 세전 근로소득 기준 ⇒ 신청월 직전 3개월 간 세전 근로소득 중 월 최고금액 기준
- 평균 세전 월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 평균 세전 월 근로소득의 50% 범위 내
- 적립금액 산정 기준 관련 탈북민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의 폭 확대

○ 약정 금액 변경 제한 완화

- 약정 2년 후 1년 단위로 변경 ⇒ 약정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하여 약정금액 변경 기회 확대

○ 일시중지 기간 확대

-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최대 1년까지 가능

○ 금융교육

- 연 1회 이상 이수 ⇒ 가입기간(초기 2년) 동안 1회 이상 이수

○ 초기 약정기간(2년) 이후 자발적 의사로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초기 약정기간(2년) 이후 연장된 약정기간 중 자발적으로 약정

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그 이자까지 지급“ 규정
추가

아. 지방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1) 서울시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플러스통장

- 국내 최초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으로 ‘희망통장’이
2007년 실시됨
- 2009년 ‘희망통장’이 ‘희망플러스통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확대됨
- 주요 사업 내용
 - 기준중위소득 45~60% 이하 저소득 가구(2016년부터 수
급자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 10만원 또는 20만원 저축(기존 수급자는 5만원 또는 10
만원)
 - 3년 가입기간
 - 저축목적은 주거비용, 창업비용, 그리고 교육비용으로 한
정됨
 - 2017년부터 신규 설발이 중지됨(가장 큰 이유는 희망키움통
장Ⅱ가 확대 실시되면서 주요 사업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점임)

□ 꿈나래통장

- 디딤씨앗통장이 시설아동 및 수급자 가정 아동에게 실시되는 반면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저축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2009년에 실시됨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자금 지원을 목표로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들의 인적자원향상에 집중하고 있음
- 주요 특성
 - 주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2017년 중위소득이 80%로 확대됨)
 - 참여 아동은 만 14세 이하이어야 함
 - 월저축액은 3, 5, 7, 10만원(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으로 구분되어 있음 2017년 월 저축액은 5, 7, 10, 12만원(12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으로 확대되었음
 - 3년 또는 5년의 저축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매칭율은 수급자의 경우 1:1, 비수급자의 경우 1:0.5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실시함
- 주요 특징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본인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부모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월저축액으로 5, 10, 15만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도 2년 또는 3년을 선택할 수 있음
- 매칭율은 수급자 1:1과 비수급자 1:0.5로 시작되었으나 2017년 4월부터 전체 1:1로 통일적용하고 있음
- 저축목적은 교육비용, 주거비용, 결혼비용, 창업비용에 한정함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2018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됨)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사업
- 주요 특징
 - 서울거주 만 15세이상~만 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월저축액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시비지원금은 월1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음
 - 3년뒤 만기적립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연계프로그램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다양한 연계 및 지원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고 있음

○ 지원프로그램 항목별 참여 누적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13>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프로그램

	지원횟수	참여 인원(명)
참가자 대상 상담 (대면상담 및 문자상담등)	1,401,893	786,287
오리엔테이션	431	9,299
자조모임	4,252	57,325
부모, 주거, 취업, 창업 교육	1,533	18,374
재무관리 오리엔테이션	123	2,782
금융교육	9,656	235,876
기타 (자원연계 등)	2,197	33,979

2) 경기도 자산형성지원사업

□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

○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빈곤예방 목적으로 2016년 실시
됨

○ 참여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
기도가 지원금을 추가적립하여 이자 등을 합해서 약 1,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설계됨

○ 주요 사업 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저축기간은 3년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17만 2천을 적립해 줌
- 적립금 용도로는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으로 설정됨

제 4 장 통장사업 발전과정과 성과

제 1 절 통장사업 발전과정

가. 희망키움통장 I

- 2010년 희망키움통장 I의 지원대상은 신청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였으나, 2011년에는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 간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됨.
- 2012년도에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I 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⑥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이 외의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함.
- ”적립금“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도 내용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벌칙 부과 등을 함“. 이 외의 추가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함.
- 2014년도에 기존 “지원대상”에 “가구원중 이행특례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가구로 함”이 추가로 명시됨. 이 외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시 지급요건”과 “적립금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함.

- 2015년도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통장 I, 차상위 대상통장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됨.
- 2016년도에 2015년도 보장시설 수급가구 소득상한 내용이 변경됨. 기존 2015년도 시설수급가구의 소득상한이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였으나, 2016년도에 “소득상한: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으로 변경됨. 이 외 변경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함.
- 2017년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의 지원내용이 기존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에서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가능”으로 변경됨. 이 외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함.
- 2018년도에는 희망키움통장 I 5만원 저축 가구의 월 저축액 변경이 허용되도록 내용이 추가됨. 5만원 저축통장 가입 후 가구 소득수준이 나아졌을 경우 10만원 저축 통장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월 적립액 변경이 허용됨. 보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 <표 4-1>에 제시함.

<표 4-1> 희망키움통장 I 변경사항

년도	변경내용
2011	[지원대상]

	- 2010년 지원대상은 신청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였으나, 2011에는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u>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u>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됨. [지원 대상] - 2011년도 지원대상에 ⑥항목이 추가됨. ⑥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 2011년에 적립기간 중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없이 일정기간 연속(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2012년에는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이 5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시 적용하여 임시·일용직 구분이 없어짐. - 2012년도부터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가구가 통장에 가입에 한하여 적용함('11년 이전 기 소득상한 특례 적용가구의 경우 특례 유지) [적립금 지원] - 2011년도 "3년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후 탈수급시 적립금 지급 → 2012년도 "3년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u>3월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u>로 변경
2012	
2013	[적립금 지원] 2012년도 내용에 아래부분 추가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3년 만기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시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처리(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미지급) -다만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대상자의 경우, 가입 당시 약정금리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이자 지급
2014	[지원 대상] 2014년도 지원대상에 가구원중 이행특례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가

구 기준으로함이 추가됨.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 지급요건]

2014년도에 아래부분 추가됨

“신청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안내하여 적립증지를 권유.단, ‘13년 이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기준 적용

[적립금 지원]

2014년도 추가내용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①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와 ②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으로, 바로 증명서류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명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매칭금을 지급('13.10.1일 탈수급 해지건부터 시행)

-희망키움통장 가입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 시 결제 증명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탈수급 해지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가능

-허위 증명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명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3년 만기 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처리(근로소득 장려금, 민간매칭금 미지급) -다만,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대상자의 경우, 가입 당시 약정금리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이자 지급
2015	2015년도에 추가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통장Ⅰ, 차상위 대상 통장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이자채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유지 확인서 발급(서식 7호 활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지원규모] '15년도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한도초과시 지원중단) *(취급기관)우리은행
2016	[지원대상]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 소득상한 내역이 변경됨 2015년도 아래내용: 시설수급가구 *소득상한: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2016년도 다음 내용으로 변경 시설수급가구 *소득상한: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 [적립금지원] 2015년도의 아래 내용이 추가됨 “단, 통장 가입기간 중 ①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와 ②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

	여 취·창업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이 변경됨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로 변경됨.
2017	[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의 지원내용이 기존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이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가능’으로 변경됨. (취급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 추가됨. 제도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포털(http://nhuf.molit.go.kr)을 참고할 수 있음 [민간매칭금] 2016년도 내용에 아래 내용이 추가됨 ③ 지자체 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 해지 시 민간매칭금 지원 횟수 기준 장려금 해지 시 민간매칭금 횟수 입력은 지자체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을 기준으로 입력 ☐ 민간매칭금 지원횟수(지자체 장려금 생성 기준) ex) ‘13년 1차(3월)가입자 36개월 납입(근로소득 장려금 36개월 발생)시 → [10회(‘13년 가입기간)X5만원]+[26회(‘14년~16년 가입기간)X2만원]=102만원 ⇒매칭금 횟수 입력시 13년 10회, 14년 이후 26회로 입력 *단, 민간매칭금 기지급금액(10만원)은 가입 당시 가상계좌에 들어간 금액이므로 민간매칭금 횟수를 기입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됨. -지자체 장려금 소급 적용이 있을 경우 소급 개우러 수 포함하여 입력 ex) 2개월 소급=2회 -(시스템)지자체장려금 발생 횟수 확인 방법

▶(행복e음) 희망키움통장 I >대상자관리>검색/더블클릭>대상자현황>장려금 지급이력 조회>적용개월 수 합계

▶(하나은행)희망키움통장 I >보고서조회>개인별적립명세조회>지자체장려금생성횟수(소급적용포함)⇒행복e음 소급적용 개월 수 및 하나은행 지자체 장려금 생성 횟수 비교 후 최종적으로 횟수를 확정하여 장려금 해지 시 입력

- 단, 하나은행 개인별명세에서 보이는 지자체 장려금 생성 횟수와 실제 입력하는 횟수가 다른 경우 중앙자활센터로 유선 또는 공문으로 통보
*지자체 장려금이 적립이체 되었으나 과지급 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환수하는 경우

** 지자체 장려금을 당월 적립이체하지 못하였으나 가상계좌가 만기하여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개별이체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민간매칭금 횟수 오류 시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이 안 될 경우 다음 민간매칭금 차수에 지급됨. 이때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안내 필수

-지자체는 장려금 해지 후 민간매칭금이 입금되기 전 가입자가 입출금 통장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수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2016년도 중도해지 내용 중

“(중도해지)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 없이 상시 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이 5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여야함”→

2017년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중도해지 내역이 변경

“(중도해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없이 상시 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없이 6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여야 함

2018년도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8	○희망키움통장 I 5만원 저축 가구의 월 저축액 변경 허용 *5만원 저축통장 가입 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나아졌을 경우 등 10만원 저축 통장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월 적립액 변경 허용 *단 목돈 마련을 통한 탈수급 유인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가
------	---

	입 후 1회에 한해 10만원 저축액으로 변경만 허용 ○희망키움통장Ⅰ 3년 만기 성공금 신설 *3년간 성실히 저축하였으나, 탈수급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일부지급 *누적소득장려금의 5% *단 탈수급에 제도전 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 허용(1회 한정) [근로장려금생성] 추가내용 <적립중지 필수사항> 내용이 2018년에 추가됨. 5만원 적립금에 대한 내용이 2018년에 추가됨. [소득 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2018년에 추가된 부분 ○(만기성공)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가능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

나. 희망키움통장Ⅱ

□ 2014년도 ‘지원대상’ 내용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에 대한 내용이 2015년도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로 변경됨.

□ 2015년도 ‘지원대상’ 내용 중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와 같은 내용이, 2016년도에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인 가구” 와 같이 변경됨. 보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아래 <표 4-2>에 제시됨.

□ 2016년도 ‘지원대상’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인 가구” 이 2017년도에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로 변경됨.

□ 2017년도의 ‘지원대상’ 내용 중 다음 항목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 2018년도에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로 변경”로 변경됨.

<표 4-2> 희망키움통장Ⅱ 변경사항

년도	변경내용
	[지원대상] 중 2014년 아래 내용 ①“*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 2015년에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로 변경 2014년 “②최저생계비의 90%이상” 2015년에 → “②최저생계비의 70% 이상”으로 변경 변경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지원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4년]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② <u>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u>(필요시 단계적으로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15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개편시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범위 조정에 따라 가입대상 등 조정 예정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90%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2015년]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u>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2015

	근로경험확인서'제출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가구범위: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가구기준 준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2016	[지원대상] 2015년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 2016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로 변경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내용이 2016년도에 추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가능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 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 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 가능” 내용이 2016년에 추가 ※변경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지원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5년도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u>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근로경험확인서'제출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가구범위: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가구기준 준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2016년도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근로경험확인서·제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가능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잔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 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 가능

[중복참여 제한]

2016년에 해당 내용이 추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지원개요]

	2015년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이 2016년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미달 시”로 변경
2017	[지원대상] 2016년도 내용 중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도에 아래와 같이 변경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변경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지원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16년도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u>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인 가구</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차상위계층) **근로경험확인서'제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2017년도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u>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u> *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xx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지원개요]

2016년 아래 내용이

①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2017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2017 년도에 아래 내용이 추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지원대상]

2017년 지원대상 중 아래 내용이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2018년 다음과 같이 변경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2018

다. 내일키움통장

- 2014년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내일키움통장의 주요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4년도에 내일키움통장 ‘지원대상’ 조건 중 ‘①신청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이전 시점 참여 사업단 성격 무방(Gateway 과정 제외)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에 관한 내용이 2015년도에 ①신청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이전 시점 참여 사업단 성격 무방(Gateway 과정 제외)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으로 변경됨.
- ‘지원대상’ 조건 중 기존 2014년도에 성실참여기준이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으로 명시되었으나, 2015년도에 위의 내용에 병가와 월차가 제외됨이 추가됨.
- 2014년도 내일키움장려금 매칭 중 사회서비스형(B형) 매칭율이 2015년도에 변경됨. 2014년도에 1:0.2(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이 2015년도에 1:0.3(매출 10%미만 사회서비스형(B형)매칭으로 변경됨. 2015년도에 변경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표>에 제시됨.

□ ‘지원개요’ 내용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②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매칭 지급)’명시되었으나 2016년도에 ②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매칭 지급’으로 변경됨. 즉,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내용이 2016년도에 변경됨. 2016년도에 변경됨 보다 주요한 사항은 아래 <표>에 명시됨.

□ 2017년도에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내일키움통장 ‘추진배경’으로 명기된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함.

□ 2018년도에 내일키움장려금 지원이 기존 2017년도에 ‘②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매칭 지급’와 같았으나,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로 변경됨. 2018년도의 보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아래 <표 4-3>에 제시함.

<표 4-3> 내일키움통장 변경사항

년도	변경내용
2015	[지원대상] 변경내용

2014년 내용

①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이전 시점 참여 사업단 성격 무방(Gateway 과정 제외)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2015년도에 밑줄친 부분과 같이 변경

①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이전 시점 참여 사업단 성격 무방(Gateway 과정 제외)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함

-기존 2014년도 성실참여기준이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이며, 여기에 병가와 월차가 제외됨이 추가됨

[내일키움장려금] 변경내용

내일키움장려금 매칭 중 사회서비스형(B형) 매칭율이 변경됨

아래와 같은 2014년 매칭율이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

2015년 매칭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B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 변경내용

2014년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의 분기별 가정산 시 내용중 ②번 내용 변경 및 ③번 내용이 추가됨

②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의 70%씩 적립

→

②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문서로 관리

로 2015년도에 변경 및 아래 ③이 추가됨.

	③ 2분기 가정산 후 1,2분기의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지원개요] 변경내용 2015년 아래 내용이 ②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매칭 지급 → 2016년 다음과 같이 변경 ②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14년 하반기)매칭 지급
2016	[본인저축액] 변경내용 2015년도 아래내용이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4.25%(기본금리+0.8%, 기본금리변경 가능) → 2016년도 아래와 같이 변경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3%(기본금리+0.8%, 기본금리변경 가능) 기존 2014~2016년 내일키움통장 추진배경 사항이 2017년도에 변경됨. (2014~2015)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10.4월~) ○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원 방식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희망키움통장 확대·개선 추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2017	→ 2017년 ○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한계 ○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2018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기존 2017년 기준 다음 매칭이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A형), 1:0.2(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B형) 매칭 2018년도에 다음과 같이 변경 →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로 변경됨. 2017년도 아래 내용이 ②지급 사유 발생시, 지자체는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매칭 횃수 결정→ 중앙자활센터는 지자체의 적립 승인된 매칭 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과 횃수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일괄 지급 → 2018년도에 다음 내용으로 변경 “②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현월 참여이력이 있는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비수익형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에 맞춰 금액을 생성하며, 중앙자활센터는 지급 사유 발생시 ‘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일괄적립·지급 해지사유발생관련 내용이 2018년도에 아래와 같이 변경 **(해지 사유 발생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및 증빙확인 확정→ 지역자활센터 지급 실행
------	--

제2절 통장사업의 현황 및 성과

가.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

-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4>에 제시됨.
- 통장 참여자수는 총 211350명으로 조사됨. 통장별 참여자수는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수가 1437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희망키움통장Ⅰ’ 참여자수가 43485명,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수가 21182명, ‘청년통장’이 2904명을 차지함.
- 시도별 내일키움통장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3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2102명, ‘부산광역시’가 1907명, ‘인천광역시’가 1736명, ‘광주광역시’가 1540명으로 나타남.
- 시도별 청년통장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남도’가 289명, ‘서울특별시’가 231명, ‘부산광역시’가 225명, ‘경상북도’가 213명으로 나타남.
- 시도별 희망키움통장Ⅰ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6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산광역시’가 5065명, ‘서울특별시’가 4201명, ‘대구광역시’가 3437명, ‘광주광역시’가 3340명으로 나타남.
- 시도별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수는 ‘경기도’가 19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9382명, ‘부산광역시’가

5602명, ‘인천광역시’가 5373명, ‘대구광역시’가 4303명으로
나타남.

<표 4-4> 시도별 통장 참가자수

시도/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 통장 II
강원도(n=5802)	1127	95	1672	2908
경기도(n=29671)	3311	653	6141	19566
경상남도(n=7906)	1417	289	1931	4269
경상북도(n=7760)	1350	213	3026	3171
광주광역시(n=8713)	1540	102	3340	3731
대구광역시(n=8774)	881	153	3437	4303
대전광역시(n=5476)	504	154	2096	2722
부산광역시(n=12799)	1907	225	5065	5602
서울특별시(n=15916)	2102	231	4201	9382
울산광역시(n=2516)	281	43	471	1721
인천광역시(n=10183)	1736	210	2864	5373
전라남도(n=6338)	1500	147	2086	2605
전라북도(n=8468)	1442	118	3137	3871
제주특별자치도(n=3355)	332	87	1210	1726
충청남도(n=5076)	979	97	1491	2509
충청북도(n=4926)	773	87	1317	2749
합계	21182	2904	43485	143779

나. 통장별 청년층 비율

- 통장별 청년층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5>에 제시됨.
- 통장별 청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내일키움통장의 ‘20대와 30대’는 2223명(10.5%)로 나타남. 이 중 20대는 1101명(5.2%) 그리고 30대는 1122명(5.3%)을 차지함. 청년통장의

‘20대와 30대’는 총 2576명(88.4%)로 나타남. 이 중 20대는 2154명(73.9%), 30대는 422명(14.5%)을 차지함. 희망키움통장Ⅰ의 20대와 30대는 총 7314명(16.7%)이었으며, 이 중 20대는 4341명(9.9%), 30대는 2973명(6.8%)을 차지함. 희망키움통장Ⅱ의 20대와 30대는 14519명(19%)이었으며, 이 중 20대는 3620명(4.7%) 그리고 30대는 10899명(14.3%)로 나타남.

<표 4-5> 통장별 청년층 비율

통장유형	20대와 30대	20대	30대
내일키움통장	2223 (10.5%)	1101 (5.2%)	1122 (5.3%)
청년희망키움통장	2576 (88.4%)	2154 (73.9%)	422 (14.5%)
희망키움통장Ⅰ	7314 (16.7%)	4341 (9.9%)	2973 (6.8%)
희망키움통장Ⅱ	14519 (19%)	3620 (4.7%)	10899 (14.3%)

다. 통장별 세대비율

- 통장별 세대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6>에 제시됨.
- 내일키움통장의 50대 비율이 7921명(37.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가 5939명(27.9%), 40대가 4431명(20.8%), 30대가 1122명(5.2%), 20대가 1101명(5.2%)로 나타남.
- 청년통장의 경우 20대가 2154명(73.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422명(14.5%), 10대가 334명(11.5%)로 나타

남.

□ 희망키움통장 I 은 50대가 18768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가 11843명(27.1%), 60대가 4569명(10.5%), 20대가 4341명(9.9%), 30대가 2973명(6.8%)로 나타났다.

□ 희망키움통장 II는 40대가 35050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7978명(23.5%), 30대가 10899명(14.3%), 20대가 3620명(4.7%), 10대가 2496명(3.3%)을 차지함.

<표 4-6> 통장별 연령대 비율

통장 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내일 키움 통장	546 (2.6%)	1101 (5.2%)	1122 (5.3%)	4431 (20.8 %)	7921 (37.2 %)	5939 (27.9 %)	221 (1.0%)	21281 (100%)
청년 희망 키움 통장	334 (11.5 %)	2154 (73.9 %)	422 (14.5 %)	3 (0.1%)	2 (0.1%)	1 (0.0%)	0 (0.0%)	2916 (100%)
희망 키움 통장 I	723 (1.7%)	4341 (9.9%)	2973 (6.8%)	11843 (27.1 %)	18768 (43.0 %)	4569 (10.5 %)	413 (1.0%)	43630 (100%)
희망 키움 통장 II	2496 (3.3%)	3620 (4.7%)	10899 (14.3 %)	35050 (45.8 %)	17978 (23.5 %)	4554 (6.0%)	1864 (2.5%)	14428 8 (100%)

라.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

□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7>에 제시

됨.

-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는 ‘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가 평균 2.480회(표준편차=1.99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내일키움통장’ 1.984회(표준편차=1.958), ‘희망키움통장Ⅰ’ .012회(표준편차=.123), ‘청년통장’ .008회(표준편차=.088)로 나타남.

<표 4-7> 통장유형별 교육이수 횟수

상품명	평균	표준편차
내일키움통장(n=21281)	1.984	1.9588
청년희망키움통장(n=2916)	.008	.0885
희망키움통장Ⅰ(n=43630)	.012	.1230
희망키움통장Ⅱ(n=76461)	2.480	1.9915

마.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

-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8>에 제시됨.
-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는 ‘경기도’가 평균 1.779회(표준편차=1.96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충청남도’ 평균 1.766회(표준편차=2.098), ‘서울특별시’ 평균 1.749회(표준편차=1.978), ‘울산광역시’ 평균 1.725회(표준편차=1.893), ‘충청북도’ 평균 1.696(표준편차=2.043)으로 나타남.

<표 4-8> 시도별 교육이수 횟수

시도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n=5802)	1.604	2.0741
경기도(n=29671)	1.779	1.9656
경상남도(n=7906)	1.642	1.9248
경상북도(n=7760)	1.243	1.8626
광주광역시(n=8713)	1.651	2.0196
대구광역시(n=8774)	1.139	1.7901
대전광역시(n=5476)	1.516	1.9644
부산광역시(n=12799)	1.635	2.0540
서울특별시(n=15916)	1.749	1.9783
울산광역시(n=2516)	1.725	1.8936
인천광역시(n=10183)	1.577	1.9484
전라남도(n=6338)	1.462	1.9340
전라북도(n=8468)	1.485	1.9350
제주특별자치도(n=3355)	1.656	2.1248
충청남도(n=5076)	1.766	2.0983
충청북도(n=4926)	1.696	2.0433

바. 통장유형별 사례관리횟수

□ 통장유형별 사례관리횟수 조사결과는 아래 <표 4-9>에 제시됨.

□ 통장유형별 사례관리횟수는 ‘희망키움통장Ⅱ’이 평균 13.182회(표준편차=13.18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내일키움통장’ 평균 2.380회(표준편차=8.337), ‘희망키움통장Ⅰ’ 평균 .998(표준편차=6.674), 청년통장 평균 .437회(.938)로 나타남.

<표 4-9> 통장유형별 사례관리횟수

상품명	평균	표준편차
내일키움통장(n=21281)	2.380	8.3379
청년희망키움통장(n=2916)	.437	.9388
희망키움통장Ⅰ(n=43630)	.998	6.6747
희망키움통장Ⅱ(n=76461)	13.182	13.1827

사. 시도별 사례관리 횟수

- 시도별 사례관리횟수는 아래 <표 4-10>에 제시됨.
- 시도별 사례관리횟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균 15.294(표준편차=22.17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 평균 13.097(표준편차=19.131), ‘충청남도’ 평균 11.849(표준편차=15.205), ‘경기도’ 평균 11.643(표준편차=13.278), ‘충청북도’ 평균 11.139(표준편차=13.814)로 나타남.

<표 4-10> 시도별 사례관리횟수

시도	평균	표준편차
강원도(n=5802)	3.906	6.5519
경기도(n=29671)	11.643	13.2787
경상남도(n=7906)	6.583	9.3178
경상북도(n=7760)	4.181	7.4988
광주광역시(n=8713)	13.097	19.1313
대구광역시(n=8774)	2.700	4.0235
대전광역시(n=5476)	3.329	4.5999
부산광역시(n=12799)	6.052	8.2882
서울특별시(n=15916)	4.421	5.4957
울산광역시(n=2516)	3.852	4.2364
인천광역시(n=10183)	5.454	6.3752
전라남도(n=6338)	6.770	19.7869
전라북도(n=8468)	7.833	13.7948
제주특별자치도(n=3355)	15.294	22.1740
충청남도(n=5076)	11.849	15.2055
충청북도(n=4926)	11.139	13.8143

아. 수혜금별 금액

- 수혜금별 금액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11>에 제시됨.

□ 수혜금별 금액은 ‘희망Ⅱ근로소득장려금’이 평균 19000.353천원 (표준편차=1114.719)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희망Ⅰ근로소득장려금’이 평균 7245.817천원(표준편차=5624.173), ‘내일근로장려금’이 평균 1216.822(표준편차=919.768), ‘청년희망장려금’이 1187.541천원(표준편차=809.075), ‘내일키움장려금’이 1182.419천원(표준편차=1159.138), ‘내일키움수익금’이 평균 1093.955천원(표준편차=1400.761), ‘민간매칭금’이 497.416천원(표준편차=804.171), ‘청년희망공제금’이 406.707천원(표준편차=169.987)로 나타남.

<표 4-11> 수혜금별 금액

	평균 (단위: 천원)	표준편차
희망Ⅰ근로소득장려금(n=42538)	7245.817	5624.173
민간매칭금(n=40893)	497.416	804.171
희망Ⅱ근로소득장려금(n=76313)	19000.353	1114.719
내일근로장려금(n=14319)	1216.822	919.768
내일키움장려금(n=6801)	1182.419	1159.138
내일키움수익금(n=18824)	1093.955	1400.761
청년희망장려금(n=2907)	1187.541	809.075
청년희망공제금(n=2758)	406.707	169.987

자. 통장 해지사유

① 희망키움통장Ⅰ 해지사유

□ 희망키움통장Ⅰ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사업소득 증가’가 21096명(59.3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수급권 포기’가 7708명(21.67%),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이 3584명(10.07%), ‘본

인적금연속미납'이 1593명(4.47%), '재산소득증가'가 684명(1.92%)으로 나타남.

<표 4-12> 희망키움통장 I 해지사유(n=35,566)

구분	빈도	비율
(대상제외) 가입요건미충족	1	.00
(일부지급)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0	.00
(일부지급) 만기성공	91	.25
(일부지급) 연령초과(65세 이상)	0	.00
(지급) 대학교 입/복학	0	.00
(지급) 만기	0	.00
(지급) 소득기준초과	0	.00
(지급) 시범사업 만기	0	.00
(지급) 자격취득	0	.00
(지급) 창업	0	.00
(지급) 취업	0	.00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0	.00
(지급) 탈수급-가구원 급증	170	.47
(지급) 탈수급-근로사업소득 증가	21096	59.31
(지급) 탈수급-수급권 포기	7708	21.67
(통장지원금수령을위한포기제외)		
(지급) 탈수급-재산소득증가(일반,금융,자동차)	684	1.92
(환수) 6개월근로활동없음	0	.00
(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0	.00
(환수)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	3584	10.07
(환수) 본인사망	100	.28
(환수) 본인적금연속미납	1593	4.47
(환수) 본인희망포기	509	1.43
(환수) 부채상환 노력 부실	0	.00
(환수) 사용용도미증빙	13	.03
(환수) 수급자진입	0	.00
(환수) 신규 사회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미사용)	0	.00
(환수) 압류/가압류	17	.04
(환수) 자활근로사업 연속 6회 연속 미참여	0	.00
(환수) 취·창업서류 기간 내 미제출	0	.00
(환수)(공통) 군입대(12개월미만불입)	0	.00
(환수)(공통) 본인사망	0	.00
(환수)(공통) 본인희망포기	0	.00

② 희망키움통장Ⅱ 해지사유

□ 희망키움통장Ⅱ 해지사유를 조사한 결과 ‘만기’가 8806명 (40.37%)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이어, ‘본인희망포기’가 5549명 (25.44%), ‘소득기준초과’가 2971명(13.62%), ‘수급자진입’이 1979명(9.07%), ‘6개월근로활동없음’이 1023명(4.69%)으로 나타남.

<표 4-13> 희망키움통장Ⅱ 해지사유(n=21,812)

구분	빈도	비율
(대상제외) 가입요건미충족	2	.00
(일부지급)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0	.00
(일부지급) 만기성공	0	.00
(일부지급) 연령초과(65세 이상)	0	.00
(지급) 대학교 입/복학	0	.00
(지급) 만기	8806	40.37
(지급) 소득기준초과	2971	13.62
(지급) 시범사업 만기	0	.00
(지급) 자격취득	0	.00
(지급) 창업	0	.00
(지급) 취업	0	.00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0	.00
(지급) 탈수급-가구원 급증	0	.00
(지급) 탈수급-근로사업소득 증가	0	.00
(지급) 탈수급-수급권 포기	0	.00
(통장지원금수령을위한포기제외)		
(지급) 탈수급-재산소득증가(일반,금융,자동차)	0	.00
(환수) 6개월근로활동없음	1023	4.69
(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325	1.49
(환수)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	0	.00
(환수) 본인사망	79	.36
(환수) 본인적금연속미납	936	4.29
(환수) 본인희망포기	5549	25.44
(환수) 부채상환 노력 부실	0	.00
(환수) 사용용도미증빙	5	.02
(환수) 수급자진입	1979	9.07
(환수) 신규 사회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0	.00

미달(미사용)		
(환수) 압류/가압류	137	.62
(환수) 자활근로사업 연속 6회 연속 미참여	0	.00
(환수) 취·창업서류 기간 내 미제출	0	.00
(환수)(공통) 군입대(12개월미만불입)	0	.00
(환수)(공통) 본인사망	0	.00
(환수)(공통) 본인희망포기	0	.00

③ 내일키움통장 해지사유

□ 통장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희망포기’가 7834명(60.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취업’이 2404명(18.54%), ‘창업’이 595명(4.59%), ‘본인적금연속미납’이 488명(3.76%), ‘탈수급’ 455명(3.51%)으로 나타남.

<표 4-14> 내일키움통장 해지사유(n=12,960)

구분	빈도	비율
(대상제외) 가입요건미충족	1	.00
(일부지급)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188	1.45
(일부지급) 만기성공	0	.00
(일부지급) 연령초과(65세 이상)	223	1.72
(지급) 대학교 입/복학	47	.36
(지급) 만기	0	.00
(지급) 소득기준초과	0	.00
(지급) 시범사업 만기	1	.00
(지급) 자격취득	70	.54
(지급) 창업	595	4.59
(지급) 취업	2404	18.54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455	3.51
(지급) 탈수급-가구원 급증	0	.00
(지급) 탈수급-근로사업소득 증가	0	.00
(지급) 탈수급-수급권 포기	0	.00
(통장지원금수령을위한포기제외)	0	.00
(지급) 탈수급-재산소득증가(일반,금융,자동차)	0	.00
(환수) 6개월근로활동없음	0	.00
(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29	.22

(환수)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	0	.00
(환수) 본인사망	40	.30
(환수) 본인적금연속미납	488	3.76
(환수) 본인희망포기	7834	60.44
(환수) 부채상환 노력 부실	1	.00
(환수) 사용용도미증빙	23	.17
(환수) 수급자진입	0	.00
(환수) 신규 사회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미사용)	167	1.28
(환수) 압류/가압류	67	.51
(환수) 자활근로사업 연속 6회 연속 미참여	297	2.29
(환수) 취·창업서류 기간 내 미제출	30	.23
(환수)(공통) 군입대(12개월미만불입)	0	.00
(환수)(공통) 본인사망	0	.00
(환수)(공통) 본인희망포기	0	.00

④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사유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사업시작이 2018년도에 이루어져 해지사유의 규모도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통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통장과 비교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희망포기’가 31명(6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군입대’가 8명(17.77%), ‘근로사업소득 증가’가 5명(11.11%), ‘본인사망’이 1명(2.22%)으로 나타남.

<표 4-15>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사유(n=45)

구분	빈도	비율
(대상제외) 가입요건미충족	0	.00
(일부지급)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0	.00
(일부지급) 만기성공	0	.00
(일부지급) 연령초과(65세 이상)	0	.00

(지급) 대학교 입/복학	0	.00
(지급) 만기	0	.00
(지급) 소득기준초과	0	.00
(지급) 시범사업 만기	0	.00
(지급) 자격취득	0	.00
(지급) 창업	0	.00
(지급) 취업	0	.00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0	.00
(지급) 탈수급-가구원 급증	0	.00
(지급) 탈수급-근로사업소득 증가	5	11.11
(지급) 탈수급-수급권 포기	0	.00
(통장지원금수령을위한포기제외)		
(지급) 탈수급-재산소득증가(일반,금융,자동차)	0	.00
(환수) 6개월근로활동없음	0	.00
(환수) 교육및사례관리기준미달	0	.00
(환수)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	0	.00
(환수) 본인사망	0	.00
(환수) 본인적금연속미납	0	.00
(환수) 본인희망포기	0	.00
(환수) 부채상환 노력 부실	0	.00
(환수) 사용용도미증빙	0	.00
(환수) 수급자진입	0	.00
(환수) 신규 사회복지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미사용)	0	.00
(환수) 압류/가압류	0	.00
(환수) 자활근로사업 연속 6회 연속 미참여	0	.00
(환수) 취·창업서류 기간 내 미제출	0	.00
(환수)(공통) 군입대(12개월미만불입)	8	17.77
(환수)(공통) 본인사망	1	2.22
(환수)(공통) 본인희망포기	31	68.88

차. 해지유형 사례수

□ 해지유형 사례수를 제시한 결과는 아래 <표 4-16>에 제시됨.

□ 해지유형 사례수는 총 78,047명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중 ‘지급 해지’가 42137명(5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환수해지’가 35517명(45.50%), ‘일부지급해지’가 390명, ‘미신규해지’가

3명으로 나타남.

<표 4-16> 해지유형 사례수(n=78,047)

	빈도	비율
미신규해지	3	.00
일부지급해지	390	.00
지급해지	42137	53.98
환수해지	35517	45.50

제 5 장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 1 절 이슈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가. 참여대상 및 유지 자격 기준

- 현재 통장사업은 근로활동을 하지만 가입기준 미충족으로 가입이 안되거나 통장 유지시 상·하한 기준이 미달 또는 초과시 해지가 되는 상황임.
- 희망키움통장 I 은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함.
- 희망키움통장 II는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함. 또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충족해야함.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 15세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표 5-1> 참여대상 및 자격(연령 및 소득기준)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 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생계수급가구의 만 15-34세 청년
가입 기준	소득 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	근로소득사업이 기준 중 위 소 득 20% 이상
	소득 상한	생계·의료 수급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 위 소 득 50%이하	-	-
유지 기준	소득 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 상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시 환 수해지	-	근로사업소득이 1 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
	소득 상한	<u>근로사업소득이</u> <u>기준 중위소득</u> 60%이하	<u>근로사업소</u> <u>득이 기준 중위</u> <u>소득 70%이하</u>	-	<u>3인가구 기준 중위</u> <u>소득 60%</u>

□ 통장별 참가자격 기준으로 소득 하한선을 설정하여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특히,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는 각각 중위소득의 40%에서 60%이상인 경우와 중위소득 2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희망키움통장 II의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상인 소득구간이 하한선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통장사업 참가기준으로 이러한 하한선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고 저축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임. 이러한 소득하한선의 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을 박탈하는 방식보다는 참여자격

을 평가기준표(근로기간, 소득수준, 가구구성원수 및 구조, 저축의지 등)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서류심사 심사표(자격요건, 가구특성, 취업지원여부, 가구여건, 사업이해도, 저축지속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그리고 기타평점)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서류심사 심사표(자립성공가능성, 통장유지가능성, 가구특성,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기타평점)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참가자 선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참여자격 기준의 변경으로 그 확대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 각 통장사업별 지원자 중에서 소득하한선을 넘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통장 유지조건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소득상한 유지선을 더 높이 책정할 필요가 있음. 일시적으로 이 소득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은 유지 및 관리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임. 통장가입후 소득이 인상되는 것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으로 유지 소득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통장 유지조건의 소득하한선의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의 유예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일시적인 소득의 하향에 대해서 그 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나. 저축액과 저축기간

- 통장별 저축액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I 과 내일키움통장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기타 통장과는 다르게,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따른 공제액 10만원을 저축액으로 인정해 줌.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모두 통장별 저축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년간 저축해야 함. 통장 가입후 3년 이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함.

<표 5-2> 저축액과 저축기간

	저축액(또는 공제)	저축기간
희망키움통장 I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3년
희망키움통장Ⅱ	매월 10만원	3년
내일키움통장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3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매월 10만원 공제	3년

- 희망키움통장 I 과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5만원과 10만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각각 저축액 선택에 따른 성과비교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즉, 각 저축액에 따른 탈수급 및 저축성과 등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매월 10만원의 저축액이 고정되어 있음. 1:1의 매칭율을 고려하면 3년 만기후 72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통장 참가자들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저축액의 경우 10만원, 15만원, 그리고 20만원 정도로 다원화해서 저축목적(주거비, 창업자금, 교육비 등)에 따른 적절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청년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발생의 인정에 따른 공제액을 저축통장으로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자발적으로 저축액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매칭 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는 기본적인 자산형성지원제도와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엄격하게 판단하면,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다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저축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저축행동과 습관을 강화하는 과정인데 반해, 현재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그러한 과정이 희박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들로 하여금 적어도 최소 5만원 정도를 저축하게 하고 매칭율이나 근로소득장려금을 인상하여 현재 지원액 및 예산 수준을 맞추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임.

□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저축기간은 국내 대부분의 저축프로그램이 관례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하지만 저축목적이 저축기간 발생하거나 저축목적의 선지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축기간

의 융통적 적용이 필요함. 즉, 최소 저축기간을 1년 반 또는 2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동안 저축을 하고, 저축목적의 투자이유 발생시 지급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 이러한 저축기간의 융통적 적용은 저축유지율을 높이고 결국에는 환수해지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인센티브: 매칭율과 근로소득장려금

- 희망키움통장 I 은 매월 5만원 적립시 0.43을, 10만원 적립시 0.85를 장려율로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음. 희망키움통장II는 매칭율이 1:1이며, 내일키움통장은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그리고 내일키움수익금)를 제공하고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0.63을 장려율로 매칭하여 지급함.

<표 5-3> 매칭율 및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율
희망키움통장 I	5만원: 0.43
	10만원: 0.85
	①5만원 적립: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장려율)
	②10만원 적립:근로소득장려금=[가구총소득-(기준중위소득40%×0.6)]×0.85(장려율)
희망키움통장 II	10만원에 1:1 매칭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1:1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이내)

청년희망키움통장	0.63 근로소득장려금= [청년총소득-334,421원]X63%(장려율)월평균40만원(최대1,440만원)
----------	---

- 인센티브로서 매칭율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핵심적 특징임. 희망키움통장Ⅱ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사업들에서는 소득 및 수익에 비례하여 저축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 매뉴얼에서는 각 통장사업별 최대 금액 저축 그리고 최대 인센티브 제공시에 받아갈 수 있는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참가자들의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받아가는 급여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참가자가 얼마를 저축하고 어떤 지원(인센티브)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움.
- 인센티브 개선방안으로 근로소득장려율에 대해서는 특히 그 선정근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저축액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최종 수급하는 금액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고민될 필요가 있음.

라.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 통장별 금융교육시간 경우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는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이때, 동일 과목 2회 이상 수강 시 불인정되므로 매년 다른 교육과정에 참여해야함. 교육은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 생애설계, 노후 준비 교육과 상담 그리고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를 내용으로 함.

□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금융교육이 필수 사항이 아님.

□ 수급자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 있으나, 통장 사업 참가후 통장사업의 이해도 향상, 저축의지 함양 등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금융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전체 통장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의무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강, 사례 관리의 시간에 추가적인 금융교육 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현실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5-4> 금융교육시간

	의무 금융교육 시간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없음
희망키움통장 II	●(주요내용)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상담,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등 -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 이상의 교육 이수 *매년 다른 교육과정 이수(동일 과목 2회 이상 수강 시 불인정)
내일키움통장	●*(의무이수대상) 희망키움통장 II 및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교육방식 (집합교육) 2회 필수 참여 원칙

*(집합교육1): 최초가입 6개월 이내 통장사업 유지(지급요건 포함)를 위한 사업 안내 및 자산·재무·신용·채무조정 등 과정(2시간)

*(집합교육2): 만기 전 6개월 이내 통장사업 해지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안내 및 자산·재무·신용·채무조정 등 과정(2시간)

-(동영상 교육) 집합교육 2회를 제외한 나머지 2회 교육은 3년 이내에 동영상 교육 이수(1회당 기본 2시간) 가능

- 시군구는 교육 대상자가 시군구로 감상문 또는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지역자활센터로 이관(스캔파일 가능)하는 등 협조 필요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동영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 사례관리는 통장사업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이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동안”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임.

□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통장사업참가 이후 적립액 지급요건으로 총 6회 이상의 사례관리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이러한 사례관리 횟수에 대한 명시는 없고 다만, 통장사업의 사례관리에 일반적인(?) 적용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통장사업의 사례관리의 체계상 누가 사례관리를 실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시하는가라는 이슈가 있음. 통장사업에서 사례관리는 일반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사가 담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지역자활센터 통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내일키움통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도 벅찬 상황에서 다른 통장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희망키움통장Ⅱ의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사례관리는 기초 사례관리와 심화 사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심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1인당 연 15~30가구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례관리가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일차적으로 사례관리에 관한 전달체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지역자활센터별 사례관리사에 관한 확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들 사례관리사의 업무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집중사례관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

제 2 절 자산형성지원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

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개편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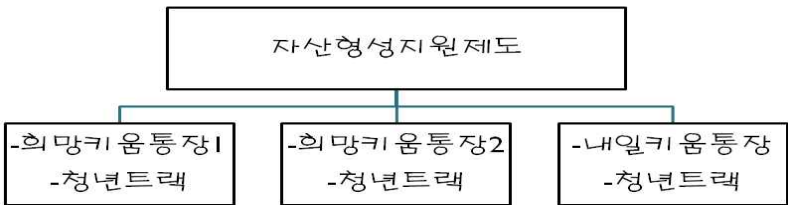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로 2018년 실시되었음. 2018년 5,000가구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3,000가구 미만(18' 9월말 기준 2,917명)으로 시작되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 I 과 그 제도 목표가 탈수급으로 동일하나, 청년을 주요 참가자로 설정하고 청년가구의 탈수급을 목표로 시작되었음. 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참가자 모집의 이슈, 본인저축액이 아닌 공제형식으로의 저축 등의 이슈가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희망키움통장 I 과 통합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트랙으로 구성하면 충분할 것임.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참가자격을 희망키움통장 I 과 같이 생계 및 의료 급여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의 경우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트랙을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 본인저축액 없이 운영되는 것은 자산형성지원제도에서 본인의 저축과정과 행위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청년희망키움통장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적어도 일정액(예를 들어, 5만원)을 저축하게끔 하고, 이 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의 비율을 향상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현행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



<그림 5-2>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방안



나. 통장 사업별 제도 개선 방안

□ 저축프로그램 각 제도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각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차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참가자를 생계급여 대상 가구에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 급여 가구 즉,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참가조건으로 소득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 하한선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일시적인 저소득의 이유로 통장사업 참여기회의 박탈은 역진적인 특성을 보임. 이상적으로는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소득의 경우에도 그 일부 심사항목으로 참가자 선발을 하는 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청년 본인의 실질적인 저축액이 없고, 근로소득 발생의 경우 공제형식으로 10만원이 저축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에 대해 개선논의가 필요함. 왜냐하면, 저축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통장에 저축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저축효과가 중요한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공제를 통해 저축이 발생하는 것은 저축동기 및 저축의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음.

- 장기적으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I의 통합이 필요해 보임. 왜냐하면 이 두 통장의 경우 저축목적인 탈수급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과 비청년의 구분을 통해 각각의 통장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한 제도 안에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희망키움통장 I &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내에서 청년트랙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 보임.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생계 및 의료 급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여기에서도 소득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앞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논의한대로, 이 소득하한선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즉, 통장 사업 지원시 평가항목들을 구성하여 지원자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됨. 처음부터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금융교육이 의무화 적용이 안되고 있음. 통장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저축액에 대한 매칭을 강조하여 일반 적금상품으로만 간주된다는 점임. 금융교육과 사례관리의 철저한 실시가 저축유지 및 저축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을 높일 것임.

○ 희망키움통장 II

- 누적 참가자 규모를 보면, 희망키움통장 II의 규모가 가장

크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희망키움통장Ⅱ의 특성임.

- 하지만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저축액 10만원에 1:1을 매칭하는 수준으로 3년 만기시 총 720만원 +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즉, 빈곤예방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그 저축액과 매칭의 합계가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음. 실질적으로 빈곤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의 상향조정 및 매칭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에도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집행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임.
- 희망키움통장Ⅱ의 유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통장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득 상승을 허용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금의 중위소득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서 내일키움통장이 활용되고 있으나, 높은 환수해지율에서 나타나듯 내일키움통장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높은 환수해지율이 나타나는 참여자 유형 및 환수해지 사유에 관한 좀더 세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환수해지율의 경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및 도우미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환수해지율의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자격기준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익형(인턴, 도우미형) 자활인턴 참가자도 내일키움통장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형의 한 유형으로 진입하고 있는 공익형 자활사업참가자의 경우 통장 가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통장가입 참가자 모집과정에서 자산형성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심사기준표(현재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심사표를 구성하여 판단하고 있음)를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 통장 참가자격을 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지급요건이 다양하다는 점도 내일키움통장의 특징인데, 지급요건별 통장 만기의 지급 현황을 분석하여 저축목적에 대한 달성율을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내일키움통장 졸업 후 희망키움통장으로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통장 사업간 체계적 연계제도 확충

□ 현재 구축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들은 제도상으로는 연계가

인정되고 있음.

○ 디딤씨앗통장 졸업자는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가능하고 희망키움통장Ⅰ 졸업자도 희망키움통장Ⅱ에 참여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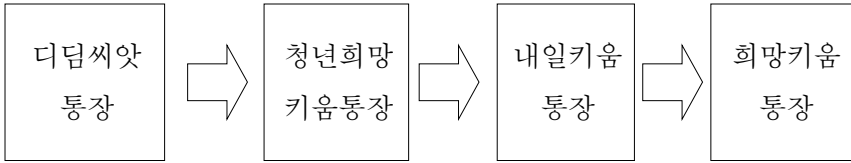
○ 또한 내일키움통장 졸업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Ⅰ에 참여가 가능함

○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장프로그램 중, 서울시의 꿈나래통장 참가자는 중앙부처 통장 프로그램 참가가 허용됨.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이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Ⅱ를 해지하고 희망키움통장Ⅰ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저축프로그램들의 제도적 연계가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축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도 거의 없고, 제도별 이전 프로그램 졸업후 연계되어 다른 저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거의 없는 실정임.

□ 통장사업들의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첫째, 1가구당 통장사업 참가를 인생동안 1회 보장한다. 둘째, 중도해지의 경우 그 이후 통장사업의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참여를 보장한다.



<그림 5-3> 통장사업의 연계

- 일차적으로 디딤씨앗통장의 졸업자들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후관리 참여의 인센티브로서 일하는 디딤씨앗통장 졸업자인 청년들로 하여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참가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디딤씨앗통장 참가자의 경우 대표적인 위험계층이기 때문에 특별 지원책으로서의 이러한 통장사업 연계가 필요함.
- 수급하면서 동시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참여 사이에 선택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일차적으로 가입시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그리고 청년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들(일자리연계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내일키움통장 졸업자들의 경우 희망키움통장Ⅰ 또는 희망키움통장Ⅱ로의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소득수준 및 급여수준에 따라 지속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슈는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추가적으로 각 통장별 제도적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통계를 확보하고 그 연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구축 및 행정지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결론

제 1 절 통장제도 개선 방안 요약

가. 통장의 제도적인 내용의 개선방안

- 통장별 참가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득하한기준들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가능한 소득하한기준을 완화하고 참가신청표를 통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참가자 선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통장 유지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소득상하한선의 기준들도 현재로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통장 취지상 탈수급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의 상승은 탈수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Ⅱ)에는 그 소득수준이 상승하더라도 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 저축액의 경우 5만원 또는 10만원의 획일적인 금액이 선정되어 있음. 행정관리상 이러한 저축액의 선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10만원의 저축액은 참가자들의 저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따라서 저축액의 인상 또는 조정이 필요함.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형식으로 저축액 10만원이 생성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적어도 청년 참가자들이 저축액을 5만원이라도 입금하는 형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함.

- 통장별 저축기간은 3년으로 확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물론 탈수급을 전제로 한 통장의 경우 3년 이전에 탈수급하면 지급해지가 가능하나, 저축목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해지 형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Ⅱ).
- 통장 만기후 매칭 및 지원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통장에 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서류를 모아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 후 지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조기지급해지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저축과정에서 저축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선정기준에 대한 단순화 작업이 필요함. 현재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들은 근로소득장려율이라던가 복수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통장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임. 인센티브 선정기준에 대한 보다 간결한 그리고 이해도가 높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통장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저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만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임. 통장사업 참가자들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금융교육 그리고 사례관리의 실시가 필요해 보임.

- 금융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장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의 양적 그리고 질적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사의 인적 확충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들의 사례관리를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례관리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임.

나. 통장별 재설계 방안 요약

- 정책 주요 타겟 대상으로서 청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통장사업의 실시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I &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스페셜 트랙으로의 청년통장에서는 매칭율을 포함한 인센티브, 금융교육, 그리고 사례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해 보임.
- 희망키움통장 I의 경우 통장참가 자격조건으로서의 소득하한선을 점차 완화하고 그 소득기준 아래에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도 저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통장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사례관리의 대상자별 그리고 욕구별 체계적인 실시 및 관리가 필요함.
- 희망키움통장 II의 경우 저축액과 매칭을 고려한 지원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음. 이는 빈곤예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저축액과 매칭율의 조정을 통해 저축목적의 투자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의 유지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통장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한계를 너무 낮게 설정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장유지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환수해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더 세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임. 일차적으로 참가자 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조건들이 필요해 보임. 단순히 자활사업 성실 참가(1개월간) 조건에 추가하여 꼼꼼한 자격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추가적으로 대상 유형별 사례관리의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해 보임.

□ 통장사업의 체계적인 연계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연계과정에서 가구별 각 통장별 자격요건에 따라 일생동안 참여 가능한 통장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통장사업별 참가자들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도적 연계성공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6-1> 통장사업 주요 개선사항들

항 목	현재	개선 내용
통장 참가자 소득기준	소득하한기준의 엄격한 적용	-소득하한기준 완화(결국엔 폐지)하고 참가신청표를 통해서 저축의지가 높은 참가자 선정
통장 유지 소득기준	통장 유지 기준으로 소득상하한선 적용	-유지조건으로 소득상하한선의 융통적인 적용
저축액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본인저축액이 아니라 공제를 통한 저축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설정하도록 수정필요
저축기간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저축기간의 엄격한 적용	-저축목적의 발생시 지급해지가 가능도록 융통적 적용 필요
매칭 및 지원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통장해지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통장에 저축하고 추가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구체적으로 저축목적이 발생시에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의 수정필요.
인센티브(매칭 및 근로소득장려금)	인센티브의 선정기준이 너무 복잡함	-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센티브 개선 필요
금융교육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의무 교육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모든 통장 사업참가자들에게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필요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규정은 있으나 충실한 사례관리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례관리의 양적 그리고 질적 확보 방안 마련 -사례관리사의 인원 확충 필요
희망키움통장Ⅱ	저축액과 매칭을 적용하더라도 그 수급액(720만원 + 이자)이 너무 낮음	-저축목적에 따른 저축액의 상향조정(15 또는 20만원)이 필요함
청년희망키움통장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희망키움 I & II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펙트럴 트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통장사업의 연계	연계가 제도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실제 연계 운영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각 통장별 참가자 모집과정에서부터 통장연계를 설명하고, 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일생동안 한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될 필요가 있음.

제 2 절 추가 논의사항들

가. 환수해지와 중도해지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 필요

□ 현재 통장사업의 참여 후 다양한 이유로 환수해지 및 중도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연속미달이 가장 높은 비율을,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본인희망포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통장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환수해지 및 중도해지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경우이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환수해지 및 중도해지자에 관한 특별 사례관리가 필요함.

□ 각 통장별 특히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본인희망포기의 환수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중도포기자에 대한 특별 사례관리를 통해 통장 중도포기의 이유 및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각 통장 프로그램들의 성과지표 개선 및 보완

□ 각 통장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율, 희망키움통장Ⅱ는 빈곤예방율, 내일키움통장은 탈수급 및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통장사업들의 목표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

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탈수급만이 성과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통장사업 참여과정에서 무엇을 성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통장별 성과지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통장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 통장사업 운영위원회는 통장사업의 재설계방안, 통장사업의 발전방향, 그리고 통장 사업의 신규모집, 운영, 해지 관련 업무들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현재 통장사업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실제적으로 활동은 미미한 실정임.
- 통장사업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통장사업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라. 소득보장과 저축프로그램 간 연계

- 최근 발표된 2019년부터 실시될 EITC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EITC의 전면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개선내용으로, 소득요건의 완화(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됨), 재산요건의 완화(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그러나 1.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재산시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최대 지급액 인상, 그리고 연령요건의 폐지(30세 이상 요건을 폐지) 등임.

-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음.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근로장려금이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

□ 한편,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저축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은 연간 2회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가능하면 소비보다는 발전적인 저축 투자(아동교육, 교육비 및 취창업 자금, 주거비 지원 등)로 연결시키자는 것임.

- EITC와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중에서 일부를 이미 참여 중인 희망키움통장 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가입할 경우, 추가 매칭 방식 적립 또는 추가 이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립을 유도하는 연계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저축을 하도록 유인 필요

□ 현재,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 선택에 의해 근로장려금 또는 아동수당 등 추가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수 있음

-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정부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46만원(매칭대상인 저축액 4만원 포함 최대 월50만원까지 저축가능)을 저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기에 추가 저축이 가능함.

- 아동수당을 디딤씨앗통장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므로, 아동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이자 등 유인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통장 상품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임

○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하여 디딤씨앗통장 또는 민간 금융권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저축하는 금액의 크기 등에 관한 연구는 없음

□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데로, 3년간 월 저축액 10만원과 매칭액 10만원의 총합이 720만원 정도로 진행된다면 그 지급액 규모가 너무 작아서 충분한 저축효과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매칭액 규모를 확대하거나, 디딤씨앗통장처럼 추가 저축액(예를 들어, 월 30만원까지 추가 저축가능)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장려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희망키움통장Ⅱ에 저축하게끔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사회투자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 추가 저축액 제도는 다른 자산형성지원제도(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Ⅰ)에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시온·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2): 415-430.
- 김자영·한창근(2017). 가구주의 장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9(2): 247-269.
- 남윤주(2018). 4차혁명(AI) 시대 청년층을 위한 재무관리역량과 자산형성(FCAB) 정책 및 프로그램. 2018 자활복지 국제심포지엄 발표글. 2018. 11. 22.
- 박지영·한창근(2014). 노숙인 매칭저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의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2): 83-108.
- 배호중·한창근(2016). 신흥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이숙현·한창근. 2017. 노인의 자산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정책* 44(3): 99-123.
- 최정태·한창근(2016). 수형자 대상 저축프로그램의 해외 사례연구: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43(2): 87-110.
- 최현수·한창근·서광국·김예슬·전지수(2017).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7-72.
- 한창근(2017).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4): 9-33.

- Han, C.-K. (2018). Jean Valjean Bank in Korea: An innovative approach to poor defendants sentenced to pay fin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8(3): 168-177.
- Han, C.-K. (2013). A comparative study of asset-based policy in Asia: Korea, Singapore, and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15(1): 54-67.
- Hong, S.-I. & Han, C.-K. (2018). An exploratory study of soldiers' attitudes toward a matched savings program in Korea.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4(1): 30-37.
- Rohe, M. W., Key, C., Grinstein-Weiss, M., Schreiner, M. &

Sherraden, M., 2017. The Impac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ssets, and Debt on Futur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Depression. *Journal of Policy Practice* 16(1), 24–45.